#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1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박덕흠 · 김도읍 · 엄태영

이종배 • 권성동 • 김용판

황보승희 · 김예지 · 정점식

コ석기・金炳旭・이종성

박성중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구입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2019년 기준 4.7건으로 전년 대비 0.3건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율 하락의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인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를 "100분의 50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	①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	
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	
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	
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u>100분의</u>
<u>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u> 경	<u>50을</u>
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